

문서번호	주택과-100529
결재일자	2015.6.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 무 관	주택사업팀장	주 택 과 장	도시관리국장
김영진	김성근	이정현	06/03 代이정현
협 조			



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

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

- 상도2동 366-12번지 일대 등 4개소

관련근거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(정비구역 등 해제)
 -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(2012. 2. 1.)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[강행규정]

추진현황

- 2015.03.19~04.17 : 주민공람 (제출의견 없음)
- 2015.05.08 : 구의회 의견청취 (의견서 채택 : 원안대로 해제하는 것에 동의)

검토결과

-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발의지 미미하고, 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시에 해제 신청

도시관리국
주 택 과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토여부	비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)	
사업추진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팀조 ()
이해관계인유무	○ 주민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	
타자원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 협 조 ()

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

I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현황

연번	대상 구역	면적	토지등 소유자	정비예정 구역고시	실태조사		주민 동향	비 고
					추진	해제		
1	상도2동 366-12	1.2ha	58	2006.3.23	8.6%	20.6%	×	
2	상도3동 350-8	1.0ha	64	〃	34.4%	14.0%	×	
3	사당2동 71-6	1.0ha	66	〃	30.3%	15.1%	○	'15. 3.1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: 보류
4	사당4동 316-177	4.2ha	249	〃	-	-	×	정비구역 요건 미충족 (충족 : 2019. 8월)
5	상도4동 244	7.4ha	482	2011.10.20	-	-	△	동의율 미충족
6	사당4동 303	2.1ha	318	〃	-	-	○	'15. 3.18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: 보류

II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

관련근거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(정비구역 등 해제)
 -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(2012. 2. 1)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, 서울특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함 [강행규정]

정비에정구역 해제대상 (4개소)

- 상도2동 366-12일대 재건축 정비에정구역 (1.2ha)
- 상도3동 350-8일대 재건축 정비에정구역 (1.0ha)
- 사당4동 316-177일대 재건축 정비에정구역 (4.2ha)
- 상도4동 244일대 재건축 정비에정구역 (7.4ha)

추진현황

- 2006. 03. 23 : 재건축 정비에정구역 지정고시 (제2006-95호)
- 2011. 10. 20 : 재건축 정비에정구역 지정고시 (제2011-309호)
- 2012. 02. 01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(일몰제 도입)
- 2015. 03. 12 : 주택재건축 정비에정구역 해제 (도시관리국장 방침 제81호)
- 2015. 03. 19 ~ 04. 17 : 주민공람 [제출의견 없음]
- 2015. 05. 08 : 구의회 의견청취 [의견서 채택 : 원안대로 해제하는 것에 동의]

III

검토결과

- 구청장은 정비에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(2012. 2. 1) 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, 서울특별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함. [강행규정]
-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발의지 미미하고, 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시에 해제신청 하고자 함

IV

향후계획

- 2015. 6월 : 정비에정구역 해제 신청
- 2015. 7월 :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15. 8월 : 정비에정구역 해제 고시

붙임 : 재건축 정비에정구역 해제 신청서 4부. 끝.